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01 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박 정・임오경・박지원

허 영ㆍ허성무ㆍ강유정

황명선 · 안호영 · 송옥주

박홍배 · 김주영 · 이학영

김태선 · 신정훈 · 소병훈

송기헌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(이하 "터미널")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이전·확충·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 · 범위

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일부"를 "전부 또는 일부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운행"을 "운행 및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운영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일부"를 "전부 또는 일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운행하는"을 "운행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"으로, "일부"를 "전부 또는 일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재정 지원) ① 국가는 여	제50조(재정 지원) ①
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	
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	
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	
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<u>일부</u> 를	<u>전부 또는</u>
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	<u>일부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<u>운행</u>	2 <u>운행</u>
	및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
	의 운영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	2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	
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	
게 필요한 자금의 <u>일부</u> 를 보조	<u>전부 또는 일</u>
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	<u> 부</u>
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	
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	
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

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 다.

- 1. ~ 8. (생략)
- ③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제1항제2 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오 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 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~ ⑨ (생 략)

<u>.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3
<u>순</u>
행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
<u>널사업을 운영하는</u>
<u>전부 또는 일부</u>
<u>.</u>
④ ~ ⑨ (현행과 같음)